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전 교육의무화 등
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149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전 교육 의무화 및 보수교육 신설 등	3
2.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12
3. 결혼중개업 관련 겸업금지 대상 명확화	16
4. 타인의 결혼중개업자 명의 사용 및 명의 대여 알선 금지	18
5. 신상정보 공증 관련 의미 명확화 및 범죄경력 제공 대상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가	20
6. 인터넷을 통한 결혼중개 표시·광고 상시 모니터링	2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9.
3. 회 부 일 : 2025. 9. 22.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중개업 운영 과정에서 신상정보 미제공, 미성년자 소개, 허위 광고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며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 및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과 행정 조치를 확대함으로써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겸업금지 적용 대상에 결혼중개업의 종사자를 추가함(안 제7조).
- 다. 결혼중개업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를 빌리고, 알선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라. 신상정보 제공 중 범죄경력 회신사항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함(안 제10조의2제1항제4호).
- 마.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의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 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 사.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는 자의 신고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함(안 제24조제2항).
- 아.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IV. 검토의견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전 교육 의무화 및 보수교육 신설 등

개정안은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전에 교육(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 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 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다.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 ----- ----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u>보증보험금</u>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제24조(교육) ① ----- -----

현행	개정안
· 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u>법인</u>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교육내용·교육방법 등 교육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u>----- -----.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u>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u>----- ----- -----,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u>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u>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u> ⑤ -----<u>제4항</u>----- -----<u>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등에</u>----- -----.

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전 교육 의무화

현행법 제4조제1항 및 제24조¹⁾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전에 미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별표 3]²⁾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소비자 보호 방안,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등 총 7시간의 집합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경우 현행법 제3조제1항³⁾은 보증보험

-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4조(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제16조제2항 관련)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	방법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 -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 보호·구제	2	집합교육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및 분쟁사례, 구제절차 등을 포함한다)	1	집합교육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 입국, 체류 등 관련 법령 해설 - 상담 이론 및 상담 실무 - 그 밖에 결혼중개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집합교육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 국제결혼 당사국의 결혼 관련 법규 및 문화 -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	1	집합교육

및 중개사무소 기준을 갖춘 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결혼 중개업 신고 전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를 대상으로 한 약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2025년 국내결혼중개 분야 약관 교육(2025.5.21.-22.)에는 결혼중개업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하였음.

한편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⁴⁾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20.8%, 국내결혼중개업 이용자의 31.9%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 등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시에도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내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결혼중개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교육업무의 민간위탁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행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⁵⁾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⁶⁾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중 일부를 민간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2023년 결혼중개업실태조사(3년 주기, 국가승인통계 제154017호), 성평등가족부.

5)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24조제1항⁷⁾은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 위탁기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규칙⁸⁾에서 교육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고시하고 있음⁹⁾.

이에 법제처는 2020년 1월 동 법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9)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제2조(교육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위탁한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3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한다. 다만,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서 직접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는바¹⁰⁾,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 및 선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의 등록·신고 전 교육의 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신설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당시 수료한 교육의 유효기간이나 이후의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등록시 1회의 교육을 수료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별도 보수교육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현행법의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 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 기존의 교육수료증을 활용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재등록이 가능한 상황임¹¹⁾.

10)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결혼중개업법 제24조(교육)(2020.1.16.)

1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

개정안은 등록 또는 신고 전에 수료한 교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등록이나 신고 후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교육의 유효기간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신고 전 교육은 실질적으로 등록 또는 신고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데, 등록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규정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봄.

교육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보다는 등록 또는 신고 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¹²⁾ 후

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벌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하는 방안이 체계상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음,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의 보수교육과 관련,

현행법 제24조제1항(개정안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24조제4항은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의무적 성격의 조항이고, 제4항은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적 성격의 조항으로, 제1항의 교육과 보수교육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봄.

즉,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이 보수교육과 별도로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하게 조문을 정리

6.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2.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종사자 등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법 제6조¹³⁾는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미성년

1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국제 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 현지 법령 위반으로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경찰청은 법률상 근거 없이 범죄경력 회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의 결혼중개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14)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법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경찰청은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법무부로부터 죄명·처분일자·선고결과 등의 자료를 통보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외국의 현지 법령 위반에 따른 형 또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국제결혼 중개 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관련 자료 요청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 제6조제4호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벌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

1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 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데, 범칙금 통고처분 여부는 법무부(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청 대상을 범죄경력조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등과 관련한 자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결혼중개업 관련 겸업금지 대상 명확화

개정안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겸업금지 대상을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종사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겸업금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7조(겸업금지)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 3.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현행법 제7조는 결혼중개업이 고용계약 또는 해외이주 등의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겸업 금지의 적용 대상이 결혼중개업자에 한정되는지 종사자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개정안은 겸업금지의 적용 대상을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종사자’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종사자는 직업소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소개사업 등의 사업주 이외에 종사자까지 겸업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직업소개사업 등의 사업주만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타인의 결혼중개업자 명의 사용 및 명의 대여 알선 금지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의 명의 대여뿐만 아니라, 타인이 결혼중개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등을 빌리는 행위, 명의 대여의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항 신설 및 제26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명의 <u>대여</u> 의 금지) (생략)	제9조(명의 <u>대여</u>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누구든지 <u>결혼중개업자로부터 명의 또는 상호를 빌려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u>
<u><신설></u>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① (생략)	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u>	3. <u>제9조제1항 및 제2항을</u> ----- ----- -----

현행	개정안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신 설> 4. ~ 10. (생략)	-----<u>빌려준 자</u> <u>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u> <u>3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u> <u>대여 등을 알선한 자</u> 4. ~ 10. (생략)

현행법 제9조¹⁵⁾는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의대여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의 명의 대여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이 결혼중개업자의 명의 등을 빌리는 행위 및 명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명의를 대여한 결혼중개업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명의 대여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1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신상정보 공증 관련 의미 명확화 및 범죄경력 제공 대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가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 및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로의 신상정보, 신상정보의 공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증 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신상정보에 포함되는 범죄경력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받아 각각의 국적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이용자의 신상정보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는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현행	개정안
<u>서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u> 1. ~ 3. (생략) 4. <u>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u>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생략) ② ~ ④ (생략)	<u>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4. <u>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u>----- ----- -----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가. 신상정보 공증 관련 의미 명확화

현행법 제10조의2¹⁶⁾는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한

- 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되,

제10조의2제1항 단서는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때 ‘외국’이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인 ‘이용자’ 또는 외국인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각각 자신들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당 국적 국가 외의 국가’를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이 있다는 법제처 등의 지적이 있음.

<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중 “외국” 관련 (2019.12.27.)>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또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당 국적 국가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법률 해석 결과,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등을 받도록 하는 대상인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받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법 문헌의 의미 명확화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현행법 제10조의2제1항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결혼중개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다시 공증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에 대하여는 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1항 본문에서는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를 국제결혼중개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결혼중개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다시 공증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 해당 조문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개정안 단서는 주어를 생략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결혼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증인을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결혼중개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다시 공증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신상정보 제공 대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추가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내용 중 범죄경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및 별지 제8호의3 서식(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은 성폭력 조회내용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 서식) >

조회내용(실효된 형을 포함)	조회결과	
	처분일자	처분내용
1. 성폭력 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위반 범죄경력 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4조의2까지 위반 범죄경력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위반 범죄경력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

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¹⁷⁾는 “성폭력 범죄 경력”으로 보기 어렵고¹⁸⁾,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범죄경력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경찰청에서는 “성매수(아동·청소년성매수 포함)” 범죄 경력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범죄 경력으로 회신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입장으로, 성매수 범죄 경력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내용 중 범죄경력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아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18)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보다 그 범위를 넓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력은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은 포함하면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6. 인터넷을 통한 결혼중개 표시·광고 상시 모니터링

개정안은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2조의2(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광고가 제12조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

현행	개정안
	<u>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u> <u>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 제12조¹⁹⁾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거짓·과장되거나 국

- 1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튜브, SNS 등을 통한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중개 광고 행위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²⁰⁾.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 1회 이상 합동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하여 홈페이지, 유튜브, 카페, 블로그, 앱 등 온라인 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성평등가족부 결혼중개업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

- (점검시기) 연 1회 이상
- (점검대상) 결혼중개업을 신고(등록)한 업체(국내, 국제) 등
- (점검내용)
 - ① 현장점검 : 결혼중개업법 위반여부, 미신고(등록) 업체 불법영업 점검
 - ② 온라인 점검 : 온라인 광고(홈페이지, 유튜브, 카페, 블로그, 앱)등 점검

< 참고: 결혼중개업체 정기점검 현황 >

구 분	점검업체수(국내, 국제)	위반업체(처분건수)
2022년	1,093개(국내 774, 국제 319)	125개(300건/ 국내 216, 국제 84)
2023년	1,156개(국내 809, 국제 347)	195개(299건/ 국내 199, 국제 100)
2024년	1,126개(국내 742, 국제 384)	203개(241건/ 국내 150, 국제 91)

20) “카톡 대화방 통한 신체정보 전달은 불법 광고...결혼정보업체 유죄 선고” - 한겨레, 2025. 8. 15..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13443.html>

“60대 신랑 20대 신부 첫날밤”...국제결혼 불법광고 여전 - 서울신문, 2024. 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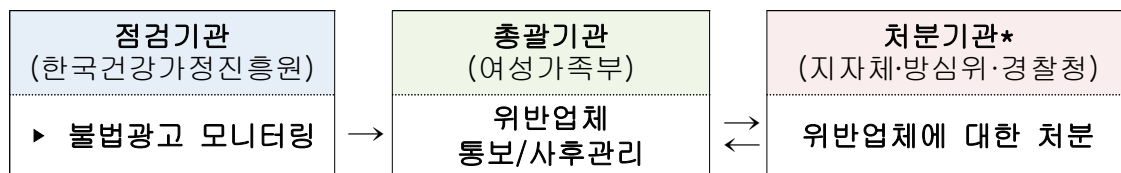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219500009>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결혼중개업체의 온라인 영상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거나, 방송심의위원회의 협조를 통한 광고 삭제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 모니터링 체계 >

- (목적) 국제결혼의 긍정적 인식 제고 및 다문화가족의 편견해소를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광고 모니터링 실시
- (점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모니터링 대상) 국제결혼중개 관련 온라인 광고물 : 유튜브, SNS 등
* ('18~'24) 유튜브, 웹페이지 중심 → ('25) 업체 홈페이지, SNS, 데이팅 앱까지 확대
- (추진절차)

<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 모니터링 체계>



* 처분기관 : 지자체(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방심위(불법광고 삭제), 경찰청(불법행위 수사)

< 최근3년간 국제결혼중개업 불법광고(온라인) 적발 및 후속조치 현황 >

연도별	적발 현황	처리현황								기타
		소계		방심위 심의의뢰		경찰청 수사의뢰		지자체 통보		
		의뢰	처리	의뢰	처리	의뢰	처리	의뢰	처리	
2022년	440	438	438	241	241	－	－	197	197	2
2023년	457	328	328	36	36	－	－	292	292	129
2024년	222	208	171	42	33	47	19	119	119	14

개정안은 현재 시행중인 결혼중개업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 광고 행위 규제와 무등록 업체 적발을 통하여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중개업의 건전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649